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번호	20-178관련
------	--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11. 30.

발 의 자 : 김종선 외 1명

## 1. 수정이유

제4조제1항제2호가목 중 ‘주도로’의 개념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## 2. 수정 주요내용

‘제4조(지원대상)-제1항-제2호-가. 주도로(경계석이 있는 차도와 보행로로서 불특정 다수가 공동 이용하는 도로)’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.

- 가. 주도로(경계석이 있는 차도 또는 보행로로서 불특정 다수가 공동 이용하는 도로)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‘제4조(지원대상)-제1항-제2호-가. 주도로(경계석이 있는 차도와 보행로로서 불특정 다수가 공동 이용하는 도로)’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.

- 가. 주도로(경계석이 있는 차도 또는 보행로로서 불특정 다수가 공동 이용하는 도로)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4조(지원대상)</p> <p>2. ----- -----.</p> <p>가. 주도로(경계석이 있는 차도와 보행로로서 불특정 다수가 공동 이용하는 도로)</p>	<p>제4조(지원대상)</p> <p>2. ----- -----.</p> <p>가. 주도로(경계석이 있는 차도 <u>또는</u> 보행로로서 불특정 다수가 공동 이용하는 도로)</p>